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거부 처벌〉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30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3
IV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 · 김주영 · 박 정 · 한민수 · 김태선 · 이해민
한정애 · 안호영 · 이재정 · 조정식 · 황명선 · 이용우
최혁진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 의안번호 : 157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3675호)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증인이나 관계 기관이 보고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

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상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불출석죄(제12조), 국회모욕죄(제13조), 위증죄(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청문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의 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증언감정법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

조의2 신설).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신설되는 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5조를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개정).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는 동시에, ② 해당 죄에 대한 양벌규정과 고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5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거부 등의 죄) ①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국회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조사 및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요구는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의무는 위원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u>존속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다만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보고 요구를 승계할 수 있다.</u> <u>제12조의3(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5조(고발) ① ----- ----- 제12조 의2·제13조-----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청문회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개최되는 것으로서,¹⁾ 국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²⁾

그런데,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진술 과정에서 사후조치 등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³⁾

이에 증인이 발언을 통하여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 증인에게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에 증인의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임.⁴⁾

1)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2) 정호영, 「국회법론」(제3판), 법문사(2012), p.619

3) 쿠팡 청문회가 2025년 초에 있었고 2024년 국감에서도 쿠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 쿠팡이 다양한 약속을 했지만, 2025년 국감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90% 정도가 미이행되거나 이행을 거부하고 있었음(KBS, “민주, 국회 청문제도 강화 예고…“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2025. 10. 28.).

4) 개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표-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5호)」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5조(청문회) ① ~ ⑤ (생략)	제65조(청문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⑥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증인이 발언을 통해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 해당 증인에게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u>
<u><신설></u>	<u>⑦ 위원회는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에 제6항에 따른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u>
⑥ ~ ⑧ (생략)	⑧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한 증인,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에 대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등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조문별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처벌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의 경우, 벌칙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유사 범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먼저, 개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조문인 제65조제6항을 인용하여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회에서의 증인이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으로,⁵⁾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 등의 죄로 처벌될 수 있음.⁶⁾

즉, 증인은 개념상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증언·진술할 의무를 지고, 법적으로는 허위의 증언·진술에 대하여 위증 등의 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래의 사후조치를 약속하는 증인의 발언을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증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증인의 사후조치 약속에 구속력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고 이행경과의 보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증인의 개념상 의무와 법적 책임에 비추어

5)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의회대사전」, 1992, p.1213 ; 국회사무처,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2018, p.458

6)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⑥ 청문회에서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⁷⁾

다음으로, 개정안은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등’과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조사 및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를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를 적용받는 위반행위와 개정안에 따른 위반행위는 그 양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유형에 상응하는 적절한 법정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증인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 등 청문회 자체를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에 비하여 청문회에 출석·증언 후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를 해태한 행위(개정안에 따른 죄)는 불법의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표-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 등의 죄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675호)」, 2025, p.5

둘째, 양벌규정(안 제12조의3 신설)의 경우, 안 제12조의2(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거부 등의 죄)의 위반행위자 외에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기관·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① 양벌규정은 직접적인 행위책임이 없는 자에게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비추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충분한 지휘·감독 의무 등이 있거나 행위자의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 등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데, 행위자가 증인 신분으로 청문회에서 발언한 사후조치 이행 약속과 그에 기인한 행위자의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거부 행위에 대하여 법인·단체·개인에게 충분한 지휘·감독의무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② 행위자가 민간 법인·단체·개인이 아닌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일 경우,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단체는 통상 국가기관에 해당되는데,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이지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후조치 보고 관련 절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의 경우, 위원회 보고요구의 시기, 보고의무의 유효기간, 보고요구의 승계 등에

8)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4, p.594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당 내용은 범죄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제12조의2제1항·제2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원회 보고요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청문회)제6항 및 제7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법문표현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관계법상 법문 표현을 참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⁰⁾

넷째, 부칙의 경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¹¹⁾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5호)」 제65조(청문회) ⑥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증인이 발언을 통해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 해당 증인에게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에 제6항에 따른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

10) 개정안 제12조의2(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거부 등의 죄)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요구는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의무는 위원회 존속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다만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보고 요구를 승계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